#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767

발의년월일 : 2018. 10. .

발 의 자: 박진희 의원(인)

#### 1. 제안이유

가. 현재 관내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통학차량 정류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어린이 통학 안전에 커다란 위해요소가 되고 있음

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등의 장, 보육시설의 장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2. 주요내용

○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 보육시설의 장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 통학 차량 정류시설 등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신설)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6.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기간 : 2018년 10월 22일 ~ 11월 1일(10일간)

나. 의견내용: "의견없음"

7. 부서협의 결과 : 적합

#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정류시설 등 설치)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 보육시설의 장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9조(정류시설 등 설치)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 보육시설의 장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 <u>제9조</u> (생략) | <u>제10조</u> (현행 제9조와 같음)   |

#### 관계법령 발췌서

### 도로교통법

-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